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나227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나2274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28 선고 2018가단13455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변론종결 2021. 8. 18.

판결선고 2021. 9. 15.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28. 선고 2018가단13455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2. 9.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1)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C 주식회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제11행부터 제5쪽 제17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5쪽 제18행을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으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피보전채권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25. B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B는 2017. 10. 25.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B에 신용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가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2017. 10. 25. 이전인 2017. 9. 26.경 이루어진 B와 피고 대표이사 I 사이의 영업권양도계약(을제1호증)의 당사자를 피고로 변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실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진 날은 위 2017. 9. 26.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과 위 영업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이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은 점, ② 양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③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이르러 계약의 내용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아 이를 단지 당사자 변경을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C도 2018. 2. 9.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이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진 날은 2018. 2. 9.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2017. 9. 26.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일을 위 2017. 9. 26.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 후에 B의 연체가 시작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재정악화는 이미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도 같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에게 책임재산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이어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는 당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B는 이 사건 채권 8,000만 원 외에도 G지회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3,500,000원, H에 대한 채권 11,204,400원, 카센타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250,391,553원 합계 345,095,953원의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차량 및 설비 시가 합계 269,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당심 증인 K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서초구청에 대한, 이 법원의 주식회사 L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이후에도 계속하여 세금을 체납하여 오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권양도 이후에 피고 주장의 외상채권 중 회수된 채권의 존재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외상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물적 담보도 갖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주식회사 L는 위 외상채권을 변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⑤ B의 대표이사 K도 위 외상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바 없고, 채권회수계획이 따로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6, 7, 25,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외상물품대금채권이 B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채권이라거나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① 기술사업계획서(갑15)에는 단순히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설비에 대한 장부가액만을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위 설비 등의 시장가치 및 감가상각 여부는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② 위 차량 및 설비는 감가상각에 따른 가치 감소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③ 위 차량 및 설비의 소재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주식회사 L의 주장(2020. 11. 18.자 사실조회회신결과)이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5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당심 증인 K의 증언, 제1심법원의 서초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B가 보유하고 있는 위 차량 및 설비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가액의 합계가 소극재산을 초과할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I이 B에 대해 미지급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지급의 일환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B에 대한 I의 체납임금 등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K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상 양수인은 피고이지 임금채권자인 I이 아닌 점, I이 B에서 나가면서 투자금 등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B의 재산상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B와 피고 대표이사 I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와 I이 기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B가 임금을

채납하면 B의 채권을 임금 대신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B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선의의 수익자 항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의 사해성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대표이사 I은 B를 최초 설립한 사람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일 무렵까지 B의 대표이사 J, K와 회사 운영을 두고 대립을 이어왔다는 것이며, 을 제10,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 I은 B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일 무렵까지 계속 B에서 전무이사 직책으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대표이사 I은 B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은 B와 피고 대표이사 I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B와 피고는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근수, 판사 박남천, 판사 박준민

채권 목록

1.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80,000,000원의 매출채권
2. 제1항 기재 채권 중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2018. 2. 9.자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45,000,000원의 채권

